

안 내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

◆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협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제2조 [목적] 협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들의 기술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여 전기재해로부터 국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전기사용합리화의 추진으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협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전기설비의 안전 및 사고에 관한 조사·연구 및 분석 건의
 2. 회원의 관리와 권익옹호, 상조 및 친목 도모
 3. 자가용전기설비와 전기기사의 실태파악
 4.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확보 및 전기사용합리화를 위한 지도·자문 및 상담
 5.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교육 및 전기기사의 보수교육
 6. 전기설비의 안전확보 및 전기사용의 합리화를 위한 강습회·보고회·연구 발표 등
 7. 전기기술에 관한 도서의 발간
 8.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윤리 확립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홍보
 10.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등록 업무지원
 11. 전기관계법령의 조사·연구 및 건의
 12. 전기설비기술과 안전에 관한 국제간 기술교류·자료 및 정보교환
 13.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부시책에 협력
 14.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서 요구·위탁 또는 지정하는 사업
 15.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9.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해임 신고에 관한 업무지원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자격증소지자와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전기기술자·업체·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종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7조 [정회원] 정회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회원 :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
2. 선임회원 : 전기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
3. 대행회원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에 소속된 자

제8조 [준회원] 준회원은 제 7 조의 정회원 이외의 전기기술자 및 전기기능사로 한다.

제9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장이 추천하는 업체·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제10조 [입회] ① 회원의 가입은 제 7 조 내지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장이 이를 승인 또는 추천함으로써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은 입회금 및 회비납부후 회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퇴회] ①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에게 탈퇴의 뜻을 통고함으로써 퇴회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회한 것으로 본다.

1. 사망
2.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제1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임원 및 대의원의 피선거권과 선거권. 다만, 제 8 조 및 제 9 조의 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 및 총회에 서의 발언권이 없다.

2. 협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권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정관·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할 의무

제13조 [회비] ① 회원의 회비는 일반회원 회비·선임회원 회비·대행회원 회비·준회원 회비 및 특별회원 회비로 구분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별도로 정하는 회비규정에 의하여 매사업년도별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회원의 회비는 연회비로 하고 당해연도 3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회원의 회비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분납할 수 있다.

④ 협회로부터 퇴회 또는 제명된 자는 이미 납부한 입회금, 회비 기타 협회 자산에 대하여 일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 및 징계] ①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권리의 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징계,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별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5조 [임원] 협회는 정회원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 16 조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중 상근이사는 2인 이내로 한다.

④ 전항의 상근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17 조 [임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하고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협회의 업무와 재산운영 및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8 조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가 총회 개회일전에 만료될 때에는 총회 개회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한다.

②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그 보선은 다음 총회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③ 임원을 보선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해임] ① 임원이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배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 20 조 [임원 보수] ①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상근이사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 21 조 [명예회장등] ① 협회는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 의결 또는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③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 22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이 정관에 위반하여 제명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4 장 총 회

제 23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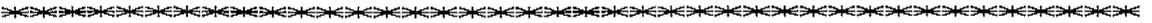
제 24 조 [대의원] ① 본부의 임원 및 지부의 지부장은 당연직대의원으로 한다.

② 대의원은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지부 및 분회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수는 정회원 100명에 1명으로 하고, 단수처리는 50명을 초과할 때 1명을 추가한다.

④ 대의원의 선출방법, 의결권등 필요한 사항은 지부 및 분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25 조 [총회소집 및 통지]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결의로써 요구할 때
3. 대의원의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소집일 10일전에 일시·장소 및 그 의안을 총회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6 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으로 하고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한다.

제 27 조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 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6.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8 조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감사1인과, 이사 2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문서관리규정에 의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 29 조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0 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으로 하고, 회장과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한다.

제 31 조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회장, 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상근이사의 임명 동의안
 5. 지부, 분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회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 8.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9. 명예회장, 고문 추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2 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제 28 조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비치한다.

제6장 위 원 회

제 33 조 [위원회] ① 제 4 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34 조 [상조회] ① 제 4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조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 35 조 [자산] 협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금과 회비
2. 사업 및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금
3. 기부금
4. 기타수입

제 36 조 [회계]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 37 조 [회계년도]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8 조 [사업계획등 편성] ① 협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2개월전까지 편성한다.

②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내에 작성한다.

제8장 본부 및 지부

제 39 조 [본부] ① 본부에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 이사 밑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그 부서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직원은 소정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제 40 조 [지부] ① 협회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역별로 지부와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부 및 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부 및 분회운영규정에 의한다.

제9장 보 칙

제 41 조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 42 조 [해산] ① 협회의 해산은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

다.

②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은 민법을 적용한다.

제 43 조 [정부승인 및 보고] ① 다음 사항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개정
2. 협회의 해산
3. 회장 선임
4. 수익사업의 경영

② 다음 사항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제의 개정(1주일내)
2. 결산 및 사업실적보고(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이내). 다만, 결산서에는 업무현황,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회계년도 개시 2개월전)
4. 임원의 선임(1주일이내)
5.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후 2주이내)
6.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제 44 조 [준용] 이 정관에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관례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협회는 설립과 동시에 대한전기협회의 기사회원과 전지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80년도 통합이후의 기사회원의 종신회비 및 협회설립시까지의 '80년도 통합당시 협회의 손익계산서 항목과 관련되는 수입과 지출을 대한전기협회측과 합의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된 순익금액으로 한다.

③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의 기사운영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 재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모든 기능을 가지며, 임기는 창립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때까지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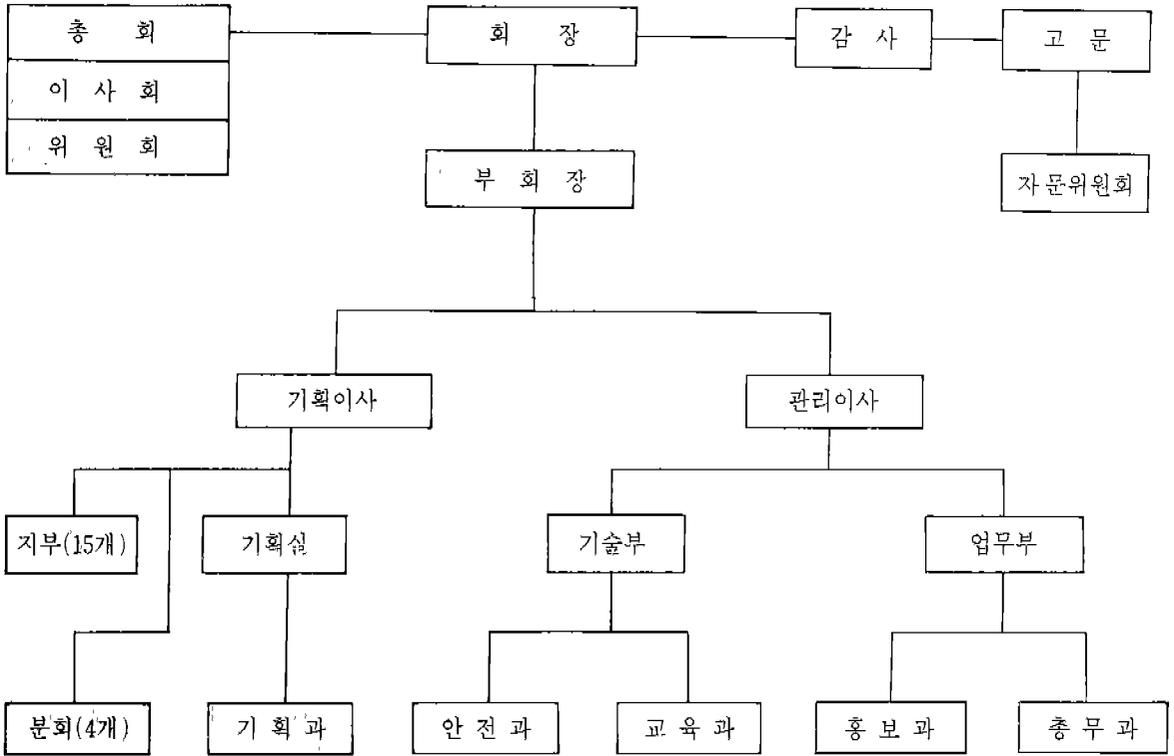
④ 창립총회는 제 7 조의 정회원중 참석자로 하여 제 27 조의 총회가 구성된 것으로 보며, 제 27 조 제 2 항의 총회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1991년도 정기총회는 제 25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립총회로 같음한다.

◆ 연 혁

연 월 일	내 용
1963. 12. 14	대한전기주임기술자 협회창립 총회
1964. 8. 21	사단법인 설립인가(상공부 제 242 호)
1968. 5. 17	사단법인 등기
1975. 4. 18	대한전기기사협회로 명칭 변경
1980. 9. 6	대한전기협회에 흡수 통합
1990. 9. 27	대한전기기사협회 발기인 대회
1990. 10. 27	대한전기기사협회 창립 총회
1990. 12. 20	사단법인 설립인가(동자부 전문 제 29102-9233 호)
1990. 12. 24	사단법인 등기(서울 민사지방법원 제2433호)

◇ 조직 및 부서별 기능



회원관리	사업계획 · 분석	선 · 해임확인지도	안전담당자교육	회지발행 · 배포	사무 · 인사
교육업무	기획개발	안전관리대행지도	기사보수교육	단행본제작판매	회계 · 경리
선 · 해임업무	예산통제	자가용업체관리	기능사교육	광고업무	총회 · 이사회
자가용업체관리	제도연구	기술지도	기술강습회	해당위원회	지부관리
취업알선	산업시찰	취업알선	세미나		인사위원회
안전관리대행지도	국제교류	해당위원회	해당위원회		회원관리
회비징수	회원권익				
지부 · 분회총회	컴퓨터운영				
회지배포	운영위원회				
	해당위원회				

* 잠정운영기간중의 임무 조정은 다음과 같다.

기획실 기획과의 제도연구, 산업시찰, 국제교류, 회원권익 업무는 안전과(기술과)에서 수행하고, 사업계획, 예산통제, 컴퓨터운영, 운영위원회 업무는 총무과에서 수행한다.

◇ 사업개요

가. 협회운영방향

- 협회설립에 따른 정부의 승인과 민법상 법적절차 완료로 협회기반정착
- 앞으로 실시될 지방자치제에 맞추어 지역별 특성있는 지부 운영
- 정부에서 위탁 또는 지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완벽한 수입태세 구축
- 각 단위사업별 위원회를 운영하여 많은 회원이 적극 참여토록 유도

나. 주요사업요약

- 자율기관으로서 기반 구축
 - 지부 및 분회설치 확대
 - 각 단위 사업별 위원회 설치 운영
 -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 전기관계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유대 강화
- 회원의 권익신장
 - 전기안전관리제도 연구
 -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선·해임 확인 지도
 - 전기안전관리대행업 운영의 지도
 - 자가용 전기설비 시설업체 관리
- 기술조사 업무
 - 전기기술지도
 - 전기사고조사
 - 전기사용합리화진단
- 교육·홍보사업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기능사 직무교육
 - 전기기사 보수교육
 - 전기기술강습회 및 세미나
 - 국내 및 해외산업시찰
 - 회지발간 및 광고
 - 기술도서 제작·판매
 - 국제교류

다. 사업추진계획

주요사업	사 업 내 용	
	사 업 명	내 용
1. 자율기관 기반구축	가. 협회설립 절차 완료 나. 이사회 운영 다. 위원회 운영 라. 지부 및 분회설치	○ 협회설립인가 승인('90. 12) : 동자부 ○ 사단법인 등기완료('90. 12) : 법원 ○ 운영계획 작성 ○ 회의 개최(정기 회의) ○ 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 수립 ○ 위원회별 운영 ○ 지부활성화 계획수립 ○ 서울지부 설치

주요사업	사업내용	
	사업명	내용
2. 회원 권익 신장	마. 제규정 제정	○ 강원지부 설치 ○ 각 필요 지역별 분회 설치 검토 ○ 제정 초안 작성 ○ 이사회 심의 확정
	가. 전기안전관리제도 연구	○ 외국제도에 대한 자료 수집 ○ 관련법규연구 ○ 관계기관협의 ○ 관계기관건의
	나.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확인지도	○ 각급 행정기관과 협력기반 구축 ○ 본부 및 각지부 전산망 설치 운영
3. 기술 조사 사업	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운영지도	○ 운영지도 ○ 대행업 안내 홍보
	라. 자가용 전기설비 시설업체관리	○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 ○ 전산 처리 준비 ○ 업체 협조 통보
	가. 전기기술지도	○ 전기설비 안전관리 계몽 ○ 전기설비 운영 현장 지도
4. 교육사업	나. 사고조사	○ 전기사고 조사분석 ○ 전기화재 조사분석
	다. 전기사용 합리화	○ 전기사용합리화 기술지도 및 정밀진단 ○ 전기사용 개선사례 발굴 전파 및 관련자 표창
	가.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직무교육	○ 교육기관 재지정('90. 12) : 동자부 ○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직무교육
5. 회지 발간 및 출판·홍보사업	나. 전기기사 보수교육	○ 교육기관재지정('90. 12) : 노동부 ○ 보수교육
	다. 전기기능사 직무교육	○ 전기설비 기능사 정기교육(신설) ○ 전기설비 기능사 선임교육
	라. 기술세미나 및 강습회	○ 해외강사 초청 세미나 ○ 국내 세미나 ○ 전기기술 강습회
6. 국제교류	바. 산업시찰	○ 해외 산업 시찰 ○ 국내 산업 시찰
	가. 회지발간	○ 협회지간행인가('90. 12) : 공보처 ○ 회지 발간 및 홍보
6. 국제교류	나. 단행본 발간 및 보급	○ 기술도서 발간보급 ○ 신규도서 발간준비
	가. 단체방문	○ 일본 전기관기 기술자 협회 방문
	나. 자료조사	○ 세계 각국 안전관리 자료조사

